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지역내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실종자·가출인 수색 및 교통사고 발생 등에 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대원의 사기진작 도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확대(안 제5조)

- 방범대원 출동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, 제7조 및 제18조

○ 예산조치 : 14,400천원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예고기간 : 2018. 12. 21. ~ 2019. 1. 9.(20일간)〕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7876(2018. 10. 5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49(2018. 10. 4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,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성주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출동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,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,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고, 지역사회의 치안수요의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